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제1차 회의결과

(2025. 05. 16.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 개요

- (목적)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주요 현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5년 5월 14일(오후2~4시)/K-META 대회의실(서울 강남)

□ 주요내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안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관련 질의응답

□ 참석자 산·학·연·관 전문가 26명(분과원 및 간사 14명/개방형 참여 12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참여유무	
분과원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
		법부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	○
	산업계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	X
		더픽트	전창대	대표	X
		애니펜	전재웅	대표	X
		글로벌포인트	조상용	대표	○
		브이리스브이알	이창수	본부장	○
	연구계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원	온라인 참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문수	본부장	X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	X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팀장	○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X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욱	책임연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권효은	수석	온라인 참여
개방형	오프라인	홍익대학교	김장환	외래교수	○
		홍익대학교	김영철	교수	○
	온라인	원광대학교	오민철	팀장	온라인 참여
		국회도서관	양영주	사무관	온라인 참여
		코드노바	한예나	대표	온라인 참여
		콘텐츠랩스	윤태원	대표이사	온라인 참여
		솔라시우	박영배	대표이사	온라인 참여
		한국광기술원	전성국	선임연구원	온라인 참여
		샐러드파이	최태우	PM	온라인 참여
		인더스마트	이유경	-	온라인 참여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수진	-	온라인 참여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유진	-	온라인 참여
	정부	과기정통부	이영호	사무관	X
사무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권효은	수석	온라인 참여	
	K-META 정책기획실	서영석	실장	○	
	K-META 정책기획실	이명진	부장	○	
	K-META 정책기획실	주정현	차장	○	
간사	K-META 정책기획실	이혜민	과장	○	

□ 주요 내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안 (발표자 :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구분	주요 내용
각국 규제 및 국내 대응	- 미국: 자율 규제 중심 - 일본: 행정명령/가이드 라인 중심 - 중국: 국가 주도의 빠른 발전 中 - 한국: 혁신 vs. 안전 균형 시도, 현실적 어려움 존재
기본법 개요	- 내년 시행 예정, 하위법령 마련 中(워킹그룹 운영) - 인공지능 시스템 모델을 중심으로 역할* 구분 필요 ※ 개발자 : AI 모델 설계, 개발 책임 주체. 이용자 : 개발된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주체. 영향자 : AI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 (예: AI 면접 대상자)
고영향 AI 및 적용	- 의료, 채용, 금융, 교통 등 고위험 분야 대상 - 투명성, 설명의무, 사전 검토 및 정부 확인 절차 도입 예정 ※ 투명성 :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설명 의무: AI 시스템의 결정에 대한 이해 가능한 설명 제공 의무. 사전 검토: 고위험 AI 시스템 도입 전 위험성 및 영향 평가 의무. 정부 확인 절차: 특정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검증 또는 승인 절차 도입 가능성.
산업 지원·제도 장치	- 민간 중심 자율성 강조 (정부의 과도한 개입 지양) - AI 샌드박스 필요성 강조 (규제 유예 또는 완화된 환경에서 신기술 시험 기회 제공). - 데이터 개방, 영향평가, 기술 보호 조치 의무화 검토 中
향후 과제 및 법제화	- 개별 산업 맞춤형 법제화 필요 (각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 마련) - 생성형 AI 고지 의무화 ※ 생성된 콘텐츠가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밝히는 의무 (예: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 AI 모델 검증 및 윤리 교육 중요성 강조 ※ 생성형 AI모델 검증 : 개발된 AI 모델의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 윤리 교육: AI 개발자, 이용자, 정책 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AI 윤리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교육 필요.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발표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팀장)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 동향	■ 미국 -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호한 상태 - 최근 권리자들의 소송 제기 - 디지털 모사물(replicas) 관련 연방법 제정을 권고함 -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발표했으나 최종 버전은 아님 ■ 유럽/일본 - 인공지능 학습의 경우 저작권 면제 - 옵트아웃 조건을 부과할 시 학습하지 못함 ※ 옵트아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학습에 이용될 수 없음. ■ 일본 저작권법 개정 - 외국 빅테크 기업에게만 유리하다는 평가 - 국내 도입 역시 동일 우려 존재
저작권 침해 판단	■ 현재는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침해 주체 명확화의 모호함, 법적 해석의 그레이존 존재 ■ (딥페이크/음악) 목소리는 저작권 미보호 대상이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적용됨 ■ AI 음악은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사례 有(아직 일반적인 기준은 아님).
저작권 주체 문제	■ AI 자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 ■ 이용자가 AI 결과물을 상당 수준으로 재가공 시 저작권 인정 가능성 존재 ■ 개발사는 대형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이해 필요 (데이터 확보 및 모델 개발 능력 집중).
인공지능법 투명성 확보 의무	■ 투명성 확보 의무 (31조) →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가 저작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예: AI 생성 여부 표시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 프롬프트 입력의 창작성 여부, 주요 쟁점 부상 →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프롬프트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질의응답

질문	답변
휴머노이드 관련 윤리 기준의 필요성	- 인공지능 기본법, 지능형로봇법에 윤리 조항이 있으나 미비함 - AI 윤리강령 외에 휴머노이드 특화 윤리 기준 자율규제 방식으로 조속히 마련 필요
AI 저작권과 법적 책임소재	- 저작권 및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계약 당사자 간 책임 외에 제3자 침해나 형사 책임은 별도 법적 정비 필요
AI 콘텐츠 사전 검열	- 사전 검열은 법적으로 어려움. 사후적 민간 자율 검증 가능 - 사업자 자율 규제 형태로 접근 필요
AI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적 근거	- 인공지능 기본법 32조에 위험성 완화, 모니터링,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명시 - 고위험 AI는 검증 요구
AI 클래스와 초상권 등 법적 이슈	초상권은 수업권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근거법에 따라 처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관련 법 적용 가능 ※ AI 클래스를 활용해 수업 진행 시, 교사 또는 학생의 얼굴이 녹화되는 경우 수업의 일부로서 일정 부분 초상권보다 수업권이 우선시됨.
AI 윤리교육의 필요성	막연한 불안 해소 및 신뢰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부-기업간 협업 필요
AI 모델 검증 관련 법 내용은?	AI법은 "모델"보다 "시스템" 개념 사용. 30조에 자율 검인증 권장, 32~33조에 고위험 AI 검증·확인 절차 명시
향후 AI 법제화 방향은?	- 기본법 중심의 규정 후, 각 도메인별 개별법 보완 필요 - 기술 가이드 라인, 보고서 형태 병행 추진 중

□ 향후 일정

○ 윤리제도분과 2차 회의

- 일시/장소 : 7월 2주차 예정, K-META
- 주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자율규제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